

- 60, 64, 73, 84, 85, 87, 90, 92, 93, 94, 95, 96, 97, 102, 104, 105, 107, 110, 111, 113, 114, 115, 121, 122, 123, 124, 125, 126, 127, 128, 129, 130, 131, 132, 133, 134, 135, 136, 138, 144, 145, 148, 149, 150, 151, 152, 153, 154, 156, 157, 159, 160, 161, 166, 167, 168, 169, 170, 171, 182)
- (2) 원료 또는 제조과정 중 잔류할 수 있는 비술산화방향족제1급아민, 잔류용매, 불소화물, 수단 등 유해물질 규격 신설(Ⅱ. 제3. 가. 21, 55, 84, 85, 110, 121, 123, 128, 130, 132, 134, 171)
- (3) 세균수, 대장균, 살모넬라, 진균수 등 미생물 규격 신설(Ⅱ. 제3. 가. 156, 157)
- (4) 성분규격 개정을 통한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

나. L-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이명인 'MSG' 삭제

- (1) 조미료의 통칭으로 오인될 수 있는 'MSG'를 삭제(Ⅱ. 제3. 가. 25)
- (2)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방지

다. 구연산삼나트륨의 정의 개정

- (1) 구연산삼나트륨 5수염을 정의에 추가(Ⅱ. 제3. 가. 17)

라. 일반시험법 중 일부 개정

- (1) 색소시험법 중 중금속 시험법 개정(Ⅳ. 32)
- (2) 색소레이크시험법의 중금속 및 바륨 시험법 개정(Ⅳ. 33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식품등 이물 보고의 기준·대상·절차 및 조사에 관한 규정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88호, 2009. 7. 10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식품중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한 영업자는 그 내용을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식품 이물 보고의 기준·대상·절차 및 조사 규정을 마련하고자 식품등 이물 보고의 기준·대상·절차 및 조사에 관한 규정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식품등의 이물 보고 대상·기준 마련
(안 제3조)

영업자가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이물의
기준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

나. 식품등의 이물 보고·통보 절차 마련
(안 제4조)

- (1) 소비자로부터 이물과 관련하여 신고 받은 영업자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.
- (2)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

·군수·구청장이 영업자로부터 이물과 관련하여 신고(보고) 받은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함.

다. 이물 혼입 원인조사 절차 마련(안 제5조)
이물 종류별 조사기관을 정하고 이물 혼입의 원인을 조사하는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.

라. 재검토 기한(안 제6조)
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3년으로 정함.

식품등의 이물보고기준·대상

내 용	조 사 기 관
1. 금속성 이물,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: 유리·플라스틱(경질의 것)·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로서 2mm 이상 크기의 물질 - 유리조각·플라스틱조각·사기조각 - 칼날, 못, 스테플러침, 클립, 철사, 바늘, 철수세미, 나사 - 볼트, 너트, 베어링, 알루미늄 등 2.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	식품의약품안전청
1. 기생충 및 그 알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: 파리,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및 곤충류(유충을 포함한다), 기생충 및 그 알 2. 그 밖에 식품등을 제조·가공·조리·소분·유통 또는 판매 과정에서 혼입되어 섭취과정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- 곰팡이류	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내 용	조 사 기 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- 이썬시개(전분재질은 제외) 등 나무류, 동물의 뺏조각(고압멸균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연화(軟化)되어 위해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 - 이빨, 돌, 모래 등 토사류, 담배꽂초 - 식품등의 제조·가공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탄화물(「식품위생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함.) -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이물 등 	

이물보고 제외대상

내 용
<p>머리카락(동물의 털을 포함한다), 비닐, 씨앗 등 풀씨류, 참치껍질·가시 또는 혈대(혈관), 종이류, 실 및 끈류(철끈은 제외한다), 원료로부터 기인되거나 제조과정 또는 유통중에 성분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여 침전·응고 또는 뭉쳐있는 형태의 이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때 등</p>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92호, 2009. 7. 14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령,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

※ 시행규칙 인용조문은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전부개정령 입법예고안(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-279호, '09. 4. 24~'09. 5. 15)을 기준으로 함

□ 주요내용

지정품목으로 추가(안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항)

가. 기타 식품판매업소 판매제품을 HACCP

(1) 냉장·냉동식품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